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구체화(안)

‘22.02.24

□ 추진 배경

- 현재 원인자부담금 제도에서는 지자체별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 방식이 상이하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인가가 지자체 대상으로 소송 제기
 - *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5)’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부적정함을 지적(세부내용을 「수도법 시행령」 등에 규정할 것을 권고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 방법의 합리성 결여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의 신뢰성 저하
 - * 수도법 제70조 수도사업자의 수도설치비용 부담의무와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제도와의 상충으로 혼란 및 소송 발생
- 이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사례(최근 판결 등) 분석을 통해 관련 법 및 표준조례 개정안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코자 함
 - * 참여기관 : 7대 특광역시, 제주, 세종 등 9개 기관(‘21.7.12 특광역시 급수(기술)부장 회의에서 ‘부산광역시’가 공동건의 대표기관으로 선정)

□ 제도운영 현황

-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있는 곳은 143개(88.8%),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없고 시설분담금을 유지중인 곳은 18개(11.2%)
 - 환경부 “표준 원인자부담금 조례” 124개, (구)조례 “원인자부담금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9개, 급수조례 내 조항으로 유지 10개

<전국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 조례 운영 현황>

지역	원인자부담금 조례 존재			시설분담금 존재
	표준 원인자부담금 조례	손괴자부담금(구)	급수 조례 내 조항	
총계(A)	161			
지자체(B)	124	9	10	18
비율(B/A)	77.0%	5.6%	6.2%	11.2%

□ 소송 주요현황

○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4개의 유형으로 분류 됨

* 「지방자치단체의 최적의 표준급수조례(안) 마련 연구, 한국상하수도협회, 2021.1」

- (부과대상과 범위)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과 범위 모호
- (부담금 납부주체) 부과대상이 주택·택지 개발사업자인지 택지에 개별 건축물을 건설하는 자인지 여부
 - * 대구시의 원인자부담금 소송결과 대법원에서 주택·택지 개발사업자로 최종판결(20. 7)
- (신·증설 유발시기) 장래의 수도시설 신·증설을 전제로 부담금 부과적정성 여부
- (이중부과) 원인자가 신·증설이 필요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개별 필지별 부과는 이중부과라는 주장

□ 소송건별 문제점

구분	소송 사례	문제점
1. 부과 대상 사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개발사업 규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부과 면적 기준에 해당되나, 실제로는 물을 적게 사용하여 과다 부과로 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발사업 규모 분류 없이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어긋남 ②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면적 기준의 근거가 없거나, 기준에서 제외된 업종도 존재하여 지자체 감사 지적 발생
2. 부담금 납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택지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쟁점 - (대구) 대법원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결(20.0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구광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 의무를 다했던 건축 행위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택지개발 시행자에 재부과

<p>3. 수도시설 신·증설 유발 시기</p>	<p>- (부안) LH는 아파트 설치에 '주거시설'에 해당하고 수도시설의 신·증설 없이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상수도를 공급하였고,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하지 않아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p>	<p>① 당장의 신·증설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장래의 신·증설을 전제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 소송 발생</p>
<p>4. 수도시설 신·증설을 원인이자 한 경우 이중부과</p>	<p>- (수원) LH는 배수지·송수관로 등 신·증설이 필요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 소멸하였음. 따라서, 개별 필지별 부과는 이중부과</p>	<p>① (2심 판결) 수도시설의 비용부담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인이자가 건설했을 경우 단위사업비 형태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음</p> <p>② 수도법 제70조와 제71조의 상충으로 원인이자가 유발한 수도시설의 신증설 비용 부담 주체 소송</p>

□ 추진 경과

-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안) 연구용역 준공 : '21. 2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사례를 통한 제도개선(안) 도출
- 원인자부담금 관련 1차 특광역시 급수과장회의 개최 : '21. 4
 - 특광역시 원인자부담금 소송사례 정보공유 및 해결방안 논의
- 원인자부담금 소송사례 관련 법률자문 시행 : '21. 5
 - 대구광역시 원인자부담금 대법원 판결 내용 중 '당연무효' 및 '소멸시효', '환급시 이율산정' 등에 관한 사항
- 원인자부담금 관련 2차 특광역시 급수과장회의 개최 : '21. 5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등 현안해결 방안 논의 ⇒ 지자체 의견수렴 및 개선안 수립 후 환경부 공동건의
-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21. 6
 - 원인자부담금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개선(안) 조사
-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및 추진계획 환경부 보고 : '21. 7

- 시급한 사안에 대한 우선 검토 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환경부)
- 원인자부담금 관련 3차 특광역시 급수부장회의 개최 : '21. 7
 - 소송사례 추가발생에 따른 내용공유 및 대응상황 논의
 - 법령 개선안 및 협의체 구성 논의(협의체 대표기관 부산시 선정)
- 원인자부담금 개선방안 지자체 의견수렴 : '21. 8
 - 수도법 및 하위법령,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개선 의견수렴
- 의견수렴결과 부산시(대표기관) 송부, 최종 개선안 작성 요청 : ~'21. 9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최종안 작성
- '제44회 급수(기술)부장 회의' 및 '대응전략회의' 의견 추가논의(서면) : ~'21. 12
 -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최종안 작성
 - * 서면의견 회신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3개 지자체

□ 제도 구체화 방안 및 환경부 의견

제도 구체화 방안

- (부과대상과 범위) 수도법 시행령에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부과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
 - * 수도법 시행령 §65조 개정
- (부담금 납부 주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납부주체가 각종 개발사업자(시행자)임을 명확화
 - * 수도법 시행령 §65조 제3항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임을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주체가 부담금 납부주체가 되도록 규정
- (원인자부담금 범위) 당해 수도시설의 공사비용 뿐만아니라,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 * 수도법 시행령 §65조 제4항 및 환경부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제4조 개정

- (이중부과) 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장래 신·증설에 소요되는 단위사업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외 원인자가 시행령제65조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추가사업비로 부과

* 환경부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별표1] 제4조제1항제1호 개정

환경부 의견

- 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경우, 나열된 사업에 제한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한정되면 안됨. 또한, 대규모 개발이라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명시만 있고, 중·소규모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 근거가 부족함.
 - 한정하지 않고 명시된 사업을 포함하는 문구로 수정함.
 - 중·소규모 및 명시된 사업 외 대규모 사업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에 세부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문구를 기입.
- 표준조례 및 표준조례[별표1]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
 - * 제4조의 각 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구분 기준이나 근거 부족으로 [별표1] 산정식 적용 기준도 근거 부족
 - * [별표1] 산정식의 단위사업비 산출 방법의 차이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며, 제4조 제1항제1호의 산식에 추가사업비를 추가하는 부분은 표준조례 및 [별표1]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향후 계획

- (공동건의문 작성) 공동건의문에 각 지자체 본부장의 서명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담당자*에게 회신(3/4까지)
 - 각 지자체 추가 의견 발생 시 현재 협의(안)과는 별도로 지자체 의견을 작성하여 전달
 - * 부산광역시 급수관리팀 정대현 주무관(051-669-4332/well@korea.kr)
- (공동건의문 발송) 공동건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에서 현안 및 공동건의문과 추가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부로 발송
- (상수도 급수(기술)부장회의) 지자체 현안 등 소송 대응 방안 논의(3월 중)

참고. 원인자부담금 제도 구체화 공동건의문 및 붙임서류 1식.

원 인 자 부 담 금 제 도 구 체 화 공 동 건 의 문

특·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수도사업자는 국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각종 이슈에 따른 시설물 개선, 안전성 향상,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와 급수구역의 확대로 신규시설 설치, 증설 등 지속적인 상수도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더해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송 사유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며, 원인자에 대한 명확한 부담금 징수가 없을 경우 이는 기존시설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사례 분석과 수도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법 및 표준조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상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향상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에 서 원인자부담금 제도 구체화를 공동으로 건의합니다.

2022. 3.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명노충	(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도희	(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	(인)

붙임1**공동건의문 기관장 서명**

지자체명	
기관장 성명	
기관장 서명	

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현행	구체화 방안	사유
<p>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p> <p>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p>	<p>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p> <p>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p>	<p>- 현행 수도법 제70조는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제71조와 상충되거나, 법령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의안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음.</p>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현행	구체화 방안	사유
<p>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p> <p>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u><신 설></u></p>	<p>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p> <p>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u>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u></p> <p><u>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시행자</u></p> <p><u>가. 도시의 개발사업</u></p> <p><u>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u></p> <p><u>다. 항만의 건설사업</u></p> <p><u>라. 공항의 건설사업</u></p>	<p>- 해당 수도사업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p> <p>- 제1항에 “수돗물을 많이 쓰는”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법령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목록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규모(수돗물을 많이 쓰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을 명시.</p> <p>- 1호의 각 목 이외에도 지자체별 개발사업의 규모가 다르며, 원인자부담금 대상에 대한 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p> <p>- 다만, 대규모 미만의 사업 규모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가급적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p>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현행	구체화 방안	사유
<p>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p> <p><u><신 설></u></p> <p>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p> <p>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p> <p>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p> <p>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p> <p>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p> <p>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p> <p>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p>	<p>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p> <p>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p> <p>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p> <p>2. 그 외 수도시설을 통해 수도물을 공급받는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상</p> <p>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u>원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수도시설의 공사비용</u></p> <p>2. <u>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소요되는 비용</u></p> <p>3.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p> <p>4.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p> <p>5.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p> <p>6.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p> <p>7.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p> <p>8.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p> <p>⑤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p>	<p>범위는 지자체 조례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함이 필요.</p> <p>- 원인자(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등)가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신·증설 유발이 없으나 장래 신·증설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p> <p>- 현재 시설의 여유용량은 신규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기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며, 해당 원인자로 인해 장래 시설용량 부족 시 신·증설을 위해서는 기존 주민들의 수도요금(원가)이 증가하므로 불합리함.</p> <p>- 따라서 원인자는 직접적 신·증설 비용뿐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p>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현행	구체화 방안	사유
<p>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p> <p>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p> <p>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p> <p>2. 제4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p> <p>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대상, 범위, 부과 및 징수, 비용의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 시행령제65조에 근거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요소별로 명시</p>

환경부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현행	구체화 방안	사유
<p>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p>	<p>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u>수도법시행령</u>,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p>	<p>-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연계성 기입</p> <p>- 직접적 신설·증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내용 추가</p>

환경부 원인가부담금 표준조례 [별표1]

현행	구체화 방안	사유
<p>○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p> <p>원인가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p> <p>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p> <p>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p> <p>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p> <p>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u>첨두계수</u></p>	<p>○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p> <p>원인가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u>추가사업비</u></p> <p>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p> <p>가. 단위사업비는 <u>기존</u> 수도시설(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등)에 대한 <u>장래 신설·증설에 소요되는</u> 수돗물 1m³당 사업비</p> <p>나. <u>추가사업비라 함은 「수도법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공사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u> 적용</p> <p>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p> <p>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u>첨두부하율</u></p>	<p>- 기존 수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장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단위사업비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직접적인 당해공사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실소요공사비용에 관한 추가사업비 내용 추가</p> <p>- 현행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 ‘이중부과’ 논리에 대한 해석 논리 명확화</p> <p>- 수도법 시행령 인용문구 사용하여 해당 범위를 명시하고, 추가사업비의 개념 명확화</p> <p>- 용어변경 : 첨두계수 ⇒ 첨두부하율 (상수도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일최대급수량 산정을 위한 요소로 첨두부하율을 사용) * 상수도설계기준(2020년 P27), 첨두부하율은 일최대급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 일최대급수량을 일평균급수량으로 나눈 값이다.</p>